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우리 위원회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2014형제00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등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지검장께 서한을 드립니다.

위 사건은 벌금 미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피해자 이00가 2011. 6. 6. 교도관과 점심 배식량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가해자 교도관 A 등으로부터 금속보호대와 발목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착용한 채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폭행 사건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했고, 2011. 11. 국가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인 데 반해 가해자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관련 수용기록과도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여 조사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013. 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평택지청은 “진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인 위 진료기록부의 기재, 진정인에 대한 징계기록에 ‘자해’에 대한 기재가 없는 사실, 인권위 서면진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3. 5. 피해자는 평택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평택지청은 2013. 9.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했을 뿐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평택지청은 가해자가 명시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문 조사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지연하던 평택지청은 사건 당시 목격자인 참고인들이 평택지청에 출석하기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2013. 12. 참고인들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촉탁

을 하면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 3. 11. 고소대리인은 평택지청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택지청은 2014. 9. 초 수사를 재기했습니다. 그런데 2014. 9. 24. 평택지청은 가해자가 근무지를 옮겨 관할이 없다며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달 말이면 국가인권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한지 3년이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수원지검 평택지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원지검으로 거듭 이송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집단 폭행에 따른 고통과 함께 검찰의 수사 지연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검찰이 진실을 밝혀 주리라 기대하며 수사 결과를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다. 2014. 5.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은 갇힌 자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구금 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자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여 사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라는 교도관의 직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법치주의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깨뜨린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4.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